

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박정자 의원 발의】



2019. 10. 2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66호로 2019년 10월 11일 박정자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위원회 관련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근거조항 변경(안 제1조)
- 나.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구체화(안 제5조)
- 다.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(2019. 10. 4. ~ 10. 10.)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불명확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임,

- 주요 개정 내용은
 - 안 제1조에서는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한 조례의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고,
 -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,
 - 그 밖에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법제처의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,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해촉 사유가 명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장애인복지법

제13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)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·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